

[붙임 2]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, 학력, 소득 기준 평가항목

1. 평가항목(최대 170점 인정)

평가 항목	공통항목				가·감점 항목	
	나이	학력	기본소양	연간소득	가점	감점
배점	25	25	20	60	40	-70

2. 공통 항목(최대 130점 인정)

가. 나 이(최대 25점)

나이	18 ~ 24세	25 ~ 29세	30 ~ 34세	35 ~ 39세	40 ~ 44세	45 ~ 50세	51세 이상
점수	23	25	23	20	12	8	3
기준	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						

나. 학 력(최대 25점)

학력	박사		석사		학사		전문학사	
	이공계/ 2개 이상	이공계 외	이공계/ 2개 이상	이공계 외	이공계/ 2개 이상	이공계 외	이공계	이공계 외
점수	25	20	20	17	17	15	15	10
기준	. 학위증(수료는 제외하며,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) . 2개 이상 : 이공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							

다. 기본소양(최대 20점)

한국어 능력	고급	중급		초급	
	TOPIK 5급 이상/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	4급/ 4단계	3급/ 3단계	2급/ 2단계	1급/ 1단계
점수	20	15	10	5	3
기준	한국어능력시험(TOPIK)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(사회통합정보망 www.socinet.go.kr)				

라. 연간 소득(최대 60점)

연 간 소 득	1억원 이상	9천만 - 1억원 미만	8천만 - 9천만원 미만	7천만 - 8천만원 미만	6천만 - 7천만원 미만	5천만 - 6천만원 미만	4천만 - 5천만원 미만	3천만 - 4천만원 미만	최저임금 - 3천만원 미만
점수	60	58	56	53	50	45	40	30	10
기준	·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(세무서 발급)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·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, 미취업자,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								

3. 가점, 감점 항목

가. 가점 항목(최대 40점)

가점 항목	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	중앙 행정기관 추천서	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	박 사		석 사		학 사		사회봉사		
				우 수	국 내	우 수	국 내	우 수	국 내	3년 이상	2년 이상 3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
점수	20	20	10	30	10	20	7	15	5	7	5	1
기준	·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: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·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: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· 우수대학 :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아래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에만 선정된 경우라도 해당 가점 인정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(500위 이내)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(200위 이내) · 사회봉사 ①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(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) 있는 경우, 가점 7점 부여 ② 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(12회 이상 및 100시간 이상) 있는 경우, 가점 5점 부여 ③ 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(6회 이상 및 50시간 이상) 있는 경우, 가점 1점 부여 ④ 신청일 기준 1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만 있는 경우, 가점 불인정											

나. 감점 항목(최대 70점)

감점 항목	출입국관리법 위반 (단위 : 만원)			형사처벌 전력(단위 : 만원)		
	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, 강제퇴거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	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	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	벌금형 200 이상 ~ 300 미만	벌금형 200 미만
점수	- 30	- 20	- 10	- 40	- 30	- 20
기준	· 통고처분 -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· 출국명령, 강제퇴거 :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			·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①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형* -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: 자격변경 등 불허 대상 -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을 경과한 경우 : 40점 감점 * 그 이상의 형이란 사형, 징역, 금고, 자격상실, 자격정지를 의미하며,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 ② 벌금형 300만원 미만 : 형이 확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항목 감점		